

산업재해보상보험 II (보험급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연금,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 등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 밖의 재활지원 및 구제방법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II (보험급여)	1
1.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5
1.1.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5
1.1.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개념 및 특징 등	5
1.1.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알아보기	6
2. 요양급여	10
2.2. 요양급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10
2.2.1.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및 범위	10
2.2.2.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12
2.2.3. 요양기간의 연장	17
2.2.4.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18
2.2.5. 추가상병 요양급여	20
2.2.6. 재요양	21
2.3. 요양급여 (요양비 등)	22
2.3.1. 요양비	22
2.3.2. 요양비 중 간병료	25
2.3.3. 요양비 중 이송비	28
2.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30
2.4.1.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30
3. 휴업급여·상병보상 연금	33
3.1. 휴업급여	33
3.1.1. 휴업급여	33
3.1.2. 부분휴업급여	34
3.1.3.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36
3.1.4. 고령자의 휴업급여	37
3.1.5.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38
3.2. 상병보상연금	39
3.2.1. 상병보상연금	40
3.2.2.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및 조정	42
3.2.3.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45
3.2.4.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45
3.2.5.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47
4. 장해급여·간병급여	50
4.2. 장해급여	50
4.2.1.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50
4.2.2.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54
4.2.3.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56
4.2.4.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58
4.2.5. 장해특별급여	60
4.3. 장해등급 판정	61
4.3.1. 장해등급 기준	61
4.3.2. 장해등급 판정	66
4.3.3. 장해등급 조정 등	70
4.4. 간병급여	71
4.4.1. 간병급여	71
5. 유족급여·장례비	75

5.1. 유족급여	75
5.1.2. 유족보상연금	75
5.1.3. 유족보상일시금	80
5.1.4. 유족특별급여	82
5.2. 장례비	84
5.2.1. 장례비	84
5.3.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85
5.3.1.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85
6.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88
6.2. 직업재활급여	88
6.2.1.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88
6.2.2. 직장복귀지원금 등	92
6.3. 그 밖의 재활지원	95
6.3.1. 맞춤형통합서비스	95
6.3.2. 창업 지원	97
6.3.3. 의료재활 지원 (후유증상관리)	100
6.3.4. 사회생활 지원	101
6.3.5. 생활지원	105
7.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110
7.1.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110
7.1.1.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110
7.1.2. 진폐 판정	113
7.1.3.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117
7.1.4. 진폐보상연금	118
7.1.5. 진폐유족연금	122
8.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128
8.1.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128
8.1.2. 평균임금의 증감	128
8.1.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130
8.1.4.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131
8.1.5.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133
9.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135
9.1.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135
9.1.1. 심사 청구	135
9.1.2. 재심사 청구	138
9.2. 행정소송	142
9.2.1. 행정소송	142
10.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146
10.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146
10.1.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146
10.2. 민사상 손해배상	148
10.2.1.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148
10.2.2. 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 조정	151

1.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1.1.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개념 및 종류 등

1.1.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개념 및 특징 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특징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국가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재근로자의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며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출처: 『2026년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업무 실무편람』 2페이지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참조).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재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손해액입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참조).

그러나 산재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만 보상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함)에 적용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적용 제외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그 근로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습니다.

또한, 가구 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은 제외함)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해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 I (업무상 재해)』의 <[산업재해보험의 개념 및 적용범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알아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 요양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요양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휴업급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 휴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휴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본문).

※ 다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 장해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해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 간병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간병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 유족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족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상병(傷病)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8에 해당할 것
-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병보상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장례비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다만, 장례를 지낸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단서).

※ 장례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례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②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 직업재활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재활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위의 재해 중 진폐가 아닌 경우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 재해 중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또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7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

찾기 쉬운 생활법령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제79조제2항).

2. 요양급여

2.2. 요양급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2.2.1.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및 범위

요양급여의 개념 및 지급 요건

요양급여의 개념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근로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요양급여의 지급 요건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 .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하는 사항

요양급여 산정 기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

찾기 쉬운 생활법령

※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의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기준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4조제2항 전단 및 별표 2).

치과보철

재활보조기구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등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재활보조기구 처방 및 검수료

이송료

치료보조기구

한방 침약 및 검사료 등

전신해부에 따른 비용

재활치료료

냉각부하검사료

처치료

예방접종비용

요양급여 비지급 대상

요양급여 비지급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5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상급병실 사용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7일의 범위에서 인정[다만, 상급병실(1인실) 사용 중 1인실을 제외한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특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상급병실(1인실) 비용으로 인정]
- √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2.2.2.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요양급여의 신청 및 지급 절차도

0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털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 소속 사업장관리번호는공단 홈페이지 '사업장관리번호' 검색 가능
-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0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 ▶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외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을 거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연장 될 수 있음

0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업재해보상보: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출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요양급여의 신청 등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급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전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본문,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 (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 (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본문,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신청 대행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2항)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 신청 대행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2항) .

보험가입자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 사실의 통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그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

소멸시효 중단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요양급여 신청(요양비 청구 포함)으로 중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단) .

따라서 요양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3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급여 신청으로 인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단,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판결](#)) .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요양급여 신청이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단) .

요양급여 지급 결정

요양급여 지급 결정 기간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함) 및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위에 따른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

사업장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이 근로복지공단의 진찰요구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을 통지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통지를 받은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의견 청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걸리는 기간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제1항).

확인 요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고, 확인을 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확인되면 그 내용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제2항).

통보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함)을 지체 없이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무담을 공제하여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제3항).

요양급여 결정에 관한 자문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필요하면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자문의사"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에 필요한 의학적 자문을 하기 위해 위촉하거나 임명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근로복지공단의 직원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함)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자문의사회의"란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보험사업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체계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두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근로복지공단이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과 유해·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관에 자문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 밖에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요양급여의 지급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 대해 요양급여(재요양을 포함함)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본문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 전단).

그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으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 후단).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란 ①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③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포함) 중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

위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

퇴직으로 인한 요양급여 수급권의 소멸 불가능

요양급여를 받은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요양지시 위반 등으로 인한 휴업급여 등의 지급 제한 및 부당이득 징수

요양지시 위반 등으로 인한 휴업급여, 상병급여 지급 제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날 이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20일분(지급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20일 미만이면 그 기간 해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제1항·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찾기 쉬운 생활법령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2.2.3. 요양기간의 연장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의 제출

진료계획 제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획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1.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의 명칭
2.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의 경과, 진료내용 및 현재의 상태
3. 요양기간을 연장할 의학적 필요성
4. 향후 입원·통원 또는 취업치료 등 치료방법, 치료내용 및 치료예정기간
5. 그 밖에 해당 근로자의 진료에 필요한 사항

진료계획의 제출기간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위의 진료계획을 3개월(부상·질병의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진료계획 변경조치를 한 경우에는 변경된 요양기간을 말함)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2항).

1. 진폐
2. 이황화탄소중독증
3. 중추 신경계통의 마비로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질병
4. 직업성 암
5. 그 밖에 위의 각 사유에 준하는 부상·질병

진료계획 변경 조치(요양기간 연장)

진료계획 변경(요양기간 연장)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요양연장 기간을 결정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제2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4항).

1.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 이내이면 신청한 치료 예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2. 진료계획서상의 치료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요양연장 기간을 인정

찾기 쉬운 생활법령

※ 다만, 치료 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4개월 이하인 경우로서 치료 예정기간이 종료되는 때 또는 그 이전에 요양이 종결될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한 치료 예정기간을 요양연장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간 연장 통보

근로복지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해 위의 진료계획 변경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2.2.4.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4조).

1.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등이 그 근로자의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맞지 않아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2. 생활근거지에서 요양하기 위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3.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4. 자문의사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의 신청 및 결정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의 신청 사유 및 신청

요양 중인 근로자는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제2항).

위의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서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다만, 의료기관 변경 요양의 신청 사유가 다음에 해당하면 의료기관 변경 요양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단서).

- ✓ 위 1.의 경우로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진찰결과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여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변경
- ✓ 위 2.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 ✓ 직장복귀지원 특별진찰 결과 작업능력강화 훈련이 필요하여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변경

※ 산재보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에 대한 결정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료기관 변경 요양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2항).

직권 의료기관 변경 요양

직권 의료기관 변경 요양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산재근로자를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위의 1.부터 4.까지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산재근로자가 병행진료를 받는 경우에 주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 병행진료의 대상이 된 상병에 대한 치료가 계속 필요하여 병행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의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의 일시 중지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의료기관 변경 요양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0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3항).

※ 병행진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서로 다른 2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병행진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1항).

1.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치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피부과, 신경과, 흉부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2. 수술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을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통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3.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폐암진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수술이 필요한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5.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지급대상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이외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상급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당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6.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연하장애평가, 본스캔 검사 및 근전도 검사를 위한 장비가 없어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7.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요양 중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응급처치를 한 경우
8. 인접한 장소(같은 건물이나 일정한 구역을 말함)에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진료체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동시진료가 필요한 경우

- √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약제의 투여 등으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통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 √ 통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가 서로 다른 상병으로 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한의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통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 9. 해당 산재근로자가 수술 등 상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으로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하기 위해 미리 의료기관 변경 요양을 하려는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수술 등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여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
- 10. 산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리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정한 재활치료전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
- 11. 뇌혈관질환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산재근로자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이상에서 수술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 변경을 한 후 계속적인 약물치료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 12. 현재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시설 및 전문 인력이 없고 통원요양으로 수술 및 처치가 가능한 경우
- 13. 직장복지지원 의료기관에서 작업능력강화훈련이 필요하여 의료기관 변경 요양 전에 통원진료를 받는 경우

2.2.5. 추가상병 요양급여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사유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사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함)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1. 그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는 요양급여의 신청에 관해 추가상병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및 결정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추가상병신청서에 추가상병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 요양급여 지급 결정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상병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상병의 진단일, 발병원인, 요양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2항).

2.2.6. 재요양

재요양의 의의

재요양의 의의

“재요양”이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받는 요양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1항).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의 요건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재요양의 신청 및 지급 결정

재요양 신청

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받으려면 재요양신청서 및 재요양소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의2서식).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 다만, 재요양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치료기간, 재요양 사유 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단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위의 3.에 따른 본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는 대신 재요양신청서에 산재근로자가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2항).

※ 재요양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로부터 재요양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요양을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재요양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함) 및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2.3. 요양급여(요양비 등)

2.3.1. 요양비

요양비 지급 사유

요양비 지급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하는 대신 다음의 요양비를 산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비

1. 해당 근로자의 재해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없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2.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특수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소재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그 필요한 시설 또는 기술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치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하고 산재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
3. 1. 또는 2.에 따라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한 후 상병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그 의료기관에서 통원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4. 1. 및 2.에 준하는 경우로서 산재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부담한 요양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에 드는 비용(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 √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 간병
- √ 이송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양비

- √ 최초 요양급여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찾기 쉬운 생활법령

- √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 할 법정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서 산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 √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 결정 전에 산재근로자가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으로 부득이하게 요양을 받고 부담한 요양비
- √ 요양급여 지급 결정 당시에 요양을 담당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부담한 요양비

요양비 청구

요양비 청구

산재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요양비를 부담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구비서류(영수증, 병원비의 경우 진료비 상세내역서, 약국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등)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 요양비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와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소멸시효 중단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요양급여 신청(요양비 청구 포함)으로 중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단).

따라서 요양비 청구가 있는 경우 요양비 청구를 한 날부터 역산하여 3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비 청구로 인해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전단,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요양비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요양비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단).

요양비 지급

요양비 지급

요양비는 요양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요양비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미지급 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미지급 요양비 수급권자의 결정

미지급 요양비의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하되, 같은 순위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제3항 및 제65조제1항).

- √ 1순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 √ 2순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 √ 3순위: 형제자매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미지급 요양비를 지급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제3항 및 제65조제4항).

미지급 요양비의 청구

요양비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요양비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요양비의 지급

미지급 요양비는 미지급 요양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요양비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요양비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요양비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사람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

2.3.2. 요양비 중 간병료

간병의 범위

간병의 범위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본문).

※ 다만,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단서).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병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

그 밖에 부상·질병 상태가 위에 열거된 사람에 준하는 사람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3조)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받은 사람

√ 2008. 7. 1. 이전에 「요양업무처리규정」(2008. 7. 1. 규정 제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 29조의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위에도 불구하고 간병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 등이 전문적인 간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만 간병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간병료 청구

간병료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에 그 간병료를 지급받으려면 간병료·이송비·보조기청구서에 구비서류(전문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전문간병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

※ 간병료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간병인"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갖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간병인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제5조 참조) .

간병료 소멸시효

간병료 청구권은 간병을 받은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

간병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간병료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간병료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간병료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

미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

간병료 지급 결정

간병료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간병료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간병료 지급

간병료 지급

간병료는 간병료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간병 필요등급 등에 따라 지급되는 간병료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문간병인의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자격에 따라 간병료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제5조) .

산재근로자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부모, 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

그 밖에 간병에 필요한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간병을 받을 근로자가 지정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4호)

구 분	간병 1등급	간병 2등급	간병 3등급
전문간병인	79,590원	66,320원	53,060원
가족·그 밖의 간병인	69,370원	57,810원	46,250원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간병을 제공하지 않아 근로자가 간병인을 지정하여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간병인이 2명 이상을 동시에 간병할 경우에는 그 간병료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그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제6조) .

간병료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

미지급 간병료의 청구 및 지급

간병료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간병료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

미지급 간병료는 미지급 간병료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

간병료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간병료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간병료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료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2.3.3. 요양비 중 이송비

이송의 범위 등

이송의 범위

이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의학적 판단을 위해 자문의사회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하는 이송

동행 간호인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이 2명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이송비

이송비의 내용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이송비의 산정

이송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송비 청구

이송비 청구

근로자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단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간병료·이송비·보조기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 이송비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송비 청구권은 이송을 받은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이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이송비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이송비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이송비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이송비의 지급 결정

이송비의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로부터 이송비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이송비의 지급

이송비의 지급

이송비는 이송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이송비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이송비의 선지급

근로복지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이송비를 사전지급 받으려는 근로자는 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8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복지공단은 이송비 사전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이송비사전지급 결정통지서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

통지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9항 및 별지 제12호 서식).

미지급 이송비의 청구 및 지급

이송비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이송비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이송비는 미지급 이송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이송비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이송비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이송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송비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사람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사람

2.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2.4.1.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신청을 한 경우로서 요양급여의 결정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에 대한 대부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제1항 참조).

요양급여 비용 대부 대상

요양급여 비용 대부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신청을 한 사람 중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급여 비용 대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

근로자의 업무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조건

대부금액

요양급여 비용 대부 예정자로 결정 된 자(이하 “대부결정자”라 함)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비용 대부금액은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대부결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9조).

대부이율, 기간 및 상환방법

요양급여 비용 대부이율은 거치기간은 연리 0.6%, 상환기간은 연리 2.6%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본문).

※ 다만, 금리의 변동 등으로 대부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대부이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단서).

요양급여 비용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요양급여 비용 대부금의 상환방법은 대부실행일부터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3항).

요양급여 비용 대부 신청

요양급여 비용 대부 신청

요양급여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가정산분을 포함함)

진료비 세부 명세서

요양급여 비용 대부 신청을 한 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2항).

요양급여 비용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직계혈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3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질병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서 대부에 따른 채무이행 등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수술 등의 급성기 상병상태의 입원환자로서 침상안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그 밖에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한 입원환자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대부금의 총당

대부금의 총당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비용 대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가 있으면 그 요양급여를 대부금의 상환에 총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휴업급여·상병보상 연금

3.1. 휴업급여

3.1.1. 휴업급여

휴업급여의 의의

휴업급여의 의의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휴업급여의 청구

휴업급여의 청구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 및 별지 제7호서식).

※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휴업급여의 지급

휴업급여 지급 기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휴업급여 지급액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미지급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압류 금지 등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근로복지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3.1.2. 부분휴업급여

부분휴업급여의 의의

부분휴업급여의 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부분휴업급여”란 산재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부분취업)을 하는 경우,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취업한 날의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요양 중 취업 사업과 종사 업무가 정해져 있을 것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사업장별부분취업내역신고서 및 취업능력 평가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본문 및 별지 제9호서식).

다만, 직장적응훈련기간 중의 부분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직장적응훈련 부분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무 내역 등을 적은 경우에는 부분휴업급여청구서로 휴업급여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2항).

※ 부분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분휴업급여 지급 금액

원칙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 부분휴업급여 산정 공식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 × 80/100 = 부분휴업급여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이란 그 취업한 날에 받은 임금 및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그 유급휴일수당을 그 날의 받은 임금으로 보고

부분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5조제3항).

※ 부분휴업급여 산정 사례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4시간 취업하여 36,000원을 수령한 경우의 부분휴업급여는 46,200원이 됩니다.

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100,000\text{원} \times 4/8) - 36,000\text{원}\} \times 80\% = 11,200\text{원}$

미취업시간에 대한 부분휴업급여액: $(100,000\text{원} \times 70\%) \times 4/8 = 35,000\text{원}$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받은 일일 총금액은 취업으로 인한 36,000원과 부분휴업급여 46,200원을 합한 82,200원이 됩니다(부분취업 없이 요양만을 하였을 경우 70,000원).

저소득 근로자 및 재요양 중인 경우의 부분휴업급여

저소득 근로자 및 재요양 중인 사람에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제2호에 따라 고령자에게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단서, 제54조제2항 및 제56조제2항).

3.1.3.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본문).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위의 경우에 2026년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에 82,560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제36조제7항 단서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 예시

재해발생일이 2026. 1. 23.이고 평균임금이 70,000원인 경우(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66,048원, 평균임금의 70%: 49,000원, 평균임금의 90%: 63,000원)

평균임금의 70%인 49,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고 평균임금의 90%인 63,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많지 않으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참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평균임금의 90%인 63,000원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위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 예시

재해발생일이 2026. 1. 23.이고 평균임금이 80,000원인 경우(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66,048원, 평균임금의 70%: 56,000원, 평균임금의 90%: 72,000원)

평균임금의 70%인 56,000원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지만, 평균임금의 90%인 72,000원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므로 66,048원이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됩니다.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2항).

3.1.4. 고령자의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포함함)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및 별표 1 제1호 본문).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66/70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62/7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58/7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54/7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50/70

찾기 쉬운 생활법령

다만, 위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함)의 휴업급여 지급액이 아래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받는 자의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아래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지급받는 자의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및 별표 1 제1호 단서).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 및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및 별표 1 제2호).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times 86/90$
62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times 82/90$
63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times 78/90$
64세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times 74/90$
65세 이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times 70/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본문 및 별표 1 제3호).

연령	지급액
61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times 80/100 \times 86/90$
62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times 80/100 \times 82/90$
63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times 80/100 \times 78/90$
64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times 80/100 \times 74/90$
65세 이후	최저 보상기준 금액 $\times 80/100 \times 70/90$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위의 고령자 휴업급여 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①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②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에는 위의 산정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

3.1.5.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액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지급액

재요양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 전단).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에 따라 판정해야 하는 질병(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증)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2항).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의 휴업급여 지급액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위에 따라 산정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최저임금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

※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이란 장해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3항 및 별표 2).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적용 제외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적용 제외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4항).

3.2. 상병보상연금

3.2.1.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의 의의

상병보상연금의 의의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휴업급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6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요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상병보상연금 청구

상병보상연금의 청구

요양급여(재요양 포함)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하려면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0조제1항,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 상병보상연금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소멸시효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상병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상병보상연금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상병보상연금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

미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상병보상연금은 다음의 상병보상연금표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 및 별표 4).

상병보상연금표

중증요양상태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상병보상연금은 상병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중증요양상태등급의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되어 중증요양상태등급의 변동 신고를 하려는 산재근로자는 중증요양상태 변동신고서에 중증요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0조제7항,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근로복지공단은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변동되면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그 변동된 날부터 새로운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미지급 상병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상병보상연금은 미지급 상병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찾기 쉬운 생활법령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의 효과

휴업급여 지급 중단

상병보상연금은 휴업급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므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일시보상 해고 가능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4항).

3.2.2.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및 조정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애 외의 장애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 기준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전단 및 별표 5).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위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본문).

다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단서).

근로복지공단은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휴업급여 또는 종전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0조제9항).

- √ 중증요양상태가 발생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한 날부터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적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이 경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과 상병보상연금의 차액을 지급함)
- √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종전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날부터 변동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적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이 경우 중증요양상태등급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함)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중증요양상태의 변동이 심하여 위의 중증요양상태등급 적용시기(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 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개월간의 중증요양상태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후단).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65조제2항).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2항).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따라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단하여 조정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제4급부터 제14급까지는 제4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애등급을 각각 해당하는 등급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보아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단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

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별표 6, 별표 8).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기존의 중증요양상태가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3.2.3.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의 산정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의 산정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

상병보상연금의 최저기준

상병보상연금의 최저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액 또는 위의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지급액을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별표 4).

※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휴업급여·상병보상 연금-휴업급여-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4.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 제1호 본문).

찾기 쉬운 생활법령

폐질등급 연령	제1급	제2급	제3급
61세	평균임금 × (329/365 - 0.04)	평균임금 × (291/365 - 0.04)	평균임금 × (257/365 - 0.04)
62세	평균임금 × (329/365 - 0.08)	평균임금 × (291/365 - 0.08)	평균임금 × (257/365 - 0.08)
63세	평균임금 × (329/365 - 0.12)	평균임금 × (291/365 - 0.12)	평균임금 × (257/365 - 0.12)
64세	평균임금 × (329/365 - 0.16)	평균임금 × (291/365 - 0.16)	평균임금 × (257/365 - 0.16)
65세 이후	평균임금 × (329/365 - 0.20)	평균임금 × (291/365 - 0.20)	평균임금 × (257/365 - 0.20)

다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90%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으로 산정된 상병보상연금보다 적으면 아래의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방법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 제1호 단서) .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와
재요양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산정방법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 및
재요양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의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및 별표 5 제2호) .

폐질등급 연령	제1급	제2급	제3급
61세	평균임금 × (329/365 0.04)	평균임금 × (291/365 0.04)	평균임금 × (257/365 0.04)
62세	평균임금 × (329/365 0.08)	평균임금 × (291/365 0.08)	평균임금 × (257/365 0.08)
63세	평균임금 × (329/365 0.12)	평균임금 × (291/365 0.12)	평균임금 × (257/365 0.12)
64세	평균임금 × (329/365 0.16)	평균임금 × (291/365 0.16)	평균임금 × (257/365 0.16)
65세 이후	평균임금 × (329/365 0.20)	평균임금 × (291/365 0.20)	평균임금 × (257/365 0.20)

평균임금의 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의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

산정방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

평균임금의 90%를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 제2호).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 평균임금의 90% × 86/90
62세	1일당 평균임금의 90% × 82/90
63세	1일당 평균임금의 90% × 78/90
64세	1일당 평균임금의 90% × 74/90
65세 이후	1일당 평균임금의 90% × 70/90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를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 제3호).

연령	지급액
61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6/90
62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82/90
63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8/90
64세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4/90
65세 이후	최저 보상기준 금액 × 80/100 × 70/90

최저임금액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는 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8조, 별표 5 제3호 및 별표 1 제2호).

연령	지급액
61세	1일당 최저임금액 × 86/90
62세	1일당 최저임금액 × 82/90
63세	1일당 최저임금액 × 78/90
64세	1일당 최저임금액 × 74/90
65세 이후	1일당 최저임금액 × 70/90

3.2.5.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요건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부상·질병 상태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전단).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할 것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은 다음의 상병보상연금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 .

상병보상연금표

중증요양상태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이 경우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하되, 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후단) .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의 상병보상연금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의 상병보상연금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위의 상병보상연금표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2항) .

위의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에는 고령자의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해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3항) .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의 상병보상연금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자의 상병보상연금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에게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제69조제4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진 경우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병보상연금 지급요건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재요양 기간 중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의 상병보상연금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지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4항 단서) .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적용 제외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적용 제외

재요양 기간 중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5항) .

4. 장애급여·간병급여

4.2. 장애급여

4.2.1. 장애급여의 청구 및 지급

장애급여의 개념 및 지급요건

장애급여의 개념

“장애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

장애급여의 지급요건

장애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

“장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5호) .

장애급여의 청구

장애급여의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치유된 후 장애보상일시금 또는 장애보상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장애급여청구서에 장애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

장애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장애를 남게 한 상병에 대한 진료과목 또는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장비가 없거나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2항) .

근로복지공단은 장애진단 내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 또는 중증요양상태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3항) .

- √ 주치의 소견상 장애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결손·변형장애 등 명백한 장애 또는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애는 제외)
- √ 중추신경(뇌와 척수) 손상으로 신경·정신계통장애가 남은 경우
- √ 그 밖에 전문진단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장해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장해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장해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장해급여의 선택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 선택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제3항 본문 및 별표 2).

장해급여표

(평균임금 기준)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다만,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제3항 단서, 별표2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제8급부터 제14급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제3항 본문,

찾기 쉬운 생활법령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 기한

장해보상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등급 제4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해당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및 별표 6).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장해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2항).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장해보상연금의 선지급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 전단).

다만,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 전단).

장해보상연금의 선급금은 해당 선급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초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2조).

미지급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미지급 장해급여의 청구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장해급여의 지급

미지급 장해급여는 미지급 장해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찾기 쉬운 생활법령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장해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

퇴직으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권의 소멸 불가능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장해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양도, 압류 또는 담보 제공 금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공과금의 면제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장해급여의 지급제한과 부당이득의 징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제한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自害)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다음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심해진 경우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장해상태가 종전의 장해등급보다 호전되었음이 의학적 소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재판정 전에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그 호전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장해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발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 의무자가 수급권자의 사망 1개월 이내에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4항).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4.2.2. 가중 장애에 대한 장해급여

가중 장애의 의의

가중 장애의 의의

“가중 장애”란 이미 장애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애부위에 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참고).

가중 장애에 대한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애가 이미 있었던 경우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이미 장애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애부위에 장애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가중 장애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중 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중 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 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 장애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애가 이미 있었던 경우의 가중 장애에 대한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방법

(가중 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 기존 장애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 = 장해보상일시금

이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이 다시 동일한 손의 셋째 손가락을 잃은 경우(치유 당시 평균임금은 50,000원, 가중 장애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에는 88일[385일(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97일(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times$ 50,000원 = 4,400,000원이 장해보상일시금이 됩니다.

※ 기존장해가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 2008. 7. 1. 이후 치유되어 장해보상연금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적용하고, 2008. 7. 1. 전에 치유된 경우에는 구 법령에 따라 기존장해를 연금일수로 환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75호, 2008.6. 25)부칙 제11조제3항].

※ 업무상 재해 외의 사유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산정 방법

기존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인 경우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 $\times$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 = 장해보상연금

이미 한쪽 팔을 손목 관절에서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5급)이 다시 다른 팔의 손목 관절을 잃은 경우[치유 당시 평균임금은 50,000원, 가중 장해는 장해등급 제2급(두 팔의 손목관절이상 상실)]에는 98일[291일(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193일(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 $\times$ 50,000원 = 4,900,000원이 1년간의 장해보상연금이 됩니다.

기존 장해가 장해등급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인 경우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기존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times$ 22.2/100] $\times$ 평균임금 = 장해보상연금

이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10급)이 다시 동일한 손의 셋째 손가락을 잃은 경우(치유 당시 평균임금은 50,000원, 가중 장해는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에는 약 19.5일[385일(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297일(장해등급 제10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 $\times$ 22.2/100 $\times$ 50,000원 = 97,5000원이 1년간의 장해보상연금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장해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해야 하는 장해급여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기존 장해에 대해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 장해등급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이미 있었던 경우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산정 방법

이미 한 팔을 손목관절에서 잃은 사람(장해등급 제5급)이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서 다시 업무상 재해로 다른 팔의 손목관절을 잃은 경우[가중 장해는 제2급(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 상실)]에는 기존장해에 대해 공제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중 장해에 대한 가중의 예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 후 그 중 심한 장해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 전단) .

※ 이 경우 장애급여의 금액은 가중 장애에 대한 장애급여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장애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애계열의 장애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애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애계열의 장애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 후단) .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애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애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애가 발생하여 다음의 장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애에 대해 따로 장애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 장애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1호 및 제46조제8항 전단) .

※ “조합등급”이란 장애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애의 조합에 대해 장애등급 기준에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1호 및 제46조제5항) .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해로서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해로서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해로서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급여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애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애계열의 장애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애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애계열의 장애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8항 후단) .

새로 발생한 장애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속귀의 장애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가중 장애에 대한 장애급여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애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애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애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애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9항) .

4.2.3. 장애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애급여

장애등급 재판정

장애등급 재판정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근로복지공단은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애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애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 .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별표 6) .

1. 장애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애 중 제1급제3호, 제2급제5호, 제3급제3호, 제5급제8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5호 및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 장애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애 중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8호, 제11급제7호,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애(척추 신경근장애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함)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 장애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애 중 제1급제6호·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4호·제5호, 제6급제6호·제7호, 제7급제7호·제11호, 제8급제4호·제6호·제7호, 제9급제11호·제13호, 제10급제10호·제13호·제14호, 제11급제9호·제10호, 제12급제9호·제10호·제12호·제14호, 제13급제8호·제11호에 해당하는 장애(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함)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 장애보상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애 중 장애등급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장애가 있어서 장애등급 기준 중 그 장애와 비슷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으로 결정된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위의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의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인정기준에도 불구하고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중 위에 따른 장애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애 때문에 최종의 장애등급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애등급의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

장애등급 재판정 실시 횟수 및 시기 등

장애등급 재판정 실시 횟수

장애등급 재판정은 장애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실시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애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애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

장애등급 재판정 절차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

장애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애등급 재판정을 하기 전에 장애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4항 및 별지 제14호 서식) .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찰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장해등급 재판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진찰일까지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및 진찰일 등을 다시 지정하여 진찰을 촉구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전단).

※ 근로복지공단의 진찰 촉구를 받은 자가 진찰을 받지 않으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일시 중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후단).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장해등급재판정을 받은 날의 전날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제120조제1항제5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제3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2항).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2항).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3항).

4.2.4.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의 재판정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등급의 재판정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한 경우(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은 이후에 재요양을 한 경우를 포함) 그 수급권자가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면 재요양 종결 후에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으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1항 전단).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산재근로자에게 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 재판정 시기, 재판정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급여가 일시중지 된다는 사실 등을 알려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7조제1항 후단).

※ 장해등급의 재판정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해급여·간병급여 - 장해급여 - 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지급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지급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전단).

※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1항).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일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 지급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하는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청구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은 종전의 장해급여의 산정에 적용된 평균임금 (장해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요양종결 당시의 평균임금) 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증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58조제4항) .

※ 평균임금의 증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평균임금의 증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의 선지급 불가능

재요양 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본문) .

※ 다만, 종전에 장해급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제5항 단서) .

4.2.5. 장해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의 의의

장해특별급여의 의의

“장해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

장해특별급여의 청구

장해특별급여의 청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장해·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서식) .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장해특별급여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11의2) .

장해등급 기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진폐장해등급 기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진폐장해등급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금액

장해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말함)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위의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전단).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후단).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납부서약을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효과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효과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장해특별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장해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장해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4.3. 장해등급 판정

4.3.1. 장해등급 기준

장해등급 기준

장해등급 기준

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

장애등급 기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 전부가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제5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8.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9.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애가 남은 사람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 대부분이 상실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발목발허리관절(족근중족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假關節, 부러진 뼈가 완전히 아물지 못하여 그 부분이 마치 관절처럼 움직이는 상태)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4.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나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15.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8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5. 코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나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18.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9. 진폐증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0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이 뚜렷하게 상실된 사람
3. 코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4. 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5. 14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6. 한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 하게 된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기능 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나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8.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10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3.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진폐증의 병형이 제2형·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2급

1.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상실된 사람
4. 7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귀의 귓바퀴가 고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6. 코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7.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또는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8. 쇠골(빗장뼈), 흉골(복장뼈), 늑골(갈비뼈), 견갑골(어깨뼈) 또는 골반골(골반뼈)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장관골에 변형이 남은 사람
12.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4.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6.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애가 남은 사람
17.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8.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제13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3. 한쪽 귀의 귓바퀴가 중등도로 상실된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13.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16.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제14급

1.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2. 한쪽 귀의 귓바퀴가 경도로 상실된 사람
3. 3개 이상의 치아에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두 팔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0.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1.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의 수상 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4.3.2. 장애등급 판정

장애등급 판정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장애등급 판정의 기본원칙

장애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애부위”라 함) 및 장애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애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애계열”이라 함)별로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장애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본문).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단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 기준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 5).

장애부위와 장애계열

장애부위

“장애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애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애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같은 장애부위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귀는 속귀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코

입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머리·얼굴·목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장애계열

“장애계열”이란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된 장애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기준으로 세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애계열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및 별표 3).

<장애계열표>

부위		기질장애	기능장애	계열 번호
눈	안구 (양쪽)		시력장애	1
			운동장애	2
			조절기능장애	3
			시야장애	4
	눈꺼풀 (좌 또는 우)	상실장애	운동장애	5
귀	속귀 등 (양쪽)		청력장애	6
	귓바퀴 (좌 또는 우)	상실장애		7
코	코안		비호흡 (鼻呼吸) 및 후각기능장애	8
	외부 코	상실장애		9
입			씹는 기능장애 및 말하는 기능장애	10
		치아장애		11
머리, 얼굴, 목		흉터장애		12
신경·정신		신경장애		13
		정신장애		14
흉복부장기 (외부 생식기 포함)		흉복부장기 장애		15
체간	척주	변형장애	기능장애	16
	그 밖의 체간골	변형장애 [쇄골 (빗장뼈), 흉골 (복장뼈), 늑골 (갈비뼈), 견갑골 (어깨뼈) 또는 골반골 (골반뼈)]		17
팔	팔 (좌 또는 우)	상실장애	기능장애	18
		변형장애 (위팔뼈 또는 아래팔뼈)		19
		흉터장애		20
	손가락 (좌 또는 우)	상실장애	기능장애	21

부위		기질장애	기능장애	계열 번호
다리	다리 (좌 또는 우)	상실장애	기능장애	22
		변형장애 [대퇴골 (넙다리뼈) 또는 하퇴골 (정강이뼈·종아리뼈)]		23
		단축 (짧아짐) 장애		24
		흉터장애		25
	발가락 (좌 또는 우)	상실장애	기능장애	26

운동기능장애의 측정

비장애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별표 4).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본문 및 별표 4).

※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단서).

위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

√ 강직, 오그라듐,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장애등급의 판정 절차

장애등급의 판정 절차

근로복지공단은 장애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애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1항).

의학적 자문을 받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2항).

장애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관절의 기능장애 (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애만을 말함)가 남은 경우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인 경우로서 장애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장애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

의학적 자문은 장애상태에 따른 장애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애상태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4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관절기능장애(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애만을 말함)

척추신경근장해

신경·정신계통장해(장애진단서상의 소견이 제12급보다 중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산재근로자에게 신경·정신계통의 장애가 있어 제7급 이상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뇌신경생리검사, 신경심리검사 등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5항).

4.3.3. 장애등급 조정 등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장애등급 조정

원칙적으로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예외적으로 장애계열이 다른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의 장애등급 조정

원칙

장애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의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본문).

- √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 √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 √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다만, 위에 따른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장애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하고, 그 장애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애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예외(1): 양쪽 안구의 시력장애 등, 팔·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 등이 남은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애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장애등급기준 중 그 장애와 비슷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으로 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 단서).

- √ 양쪽 안구에 시력장애·조절기능장애·운동장애 또는 시야장애가 각각 남은 경우
- √ 팔에 기능장애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
- √ 다리에 기능장애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상실 또는 기능장애가 남은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예외(2) : 조합등급에 대한 장애등급 기준이 있는 경우

장애계열이 다른 장애가 둘 이상 있더라도 장애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애의 조합에 대해 장애등급기준에 하나의 장애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함)으로 정해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애등급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1호) .

- √ 두 팔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로서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5호·제6호 및 제2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 √ 두 손의 손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로서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제3급제5호 및 제4급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 √ 두 다리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로서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제1급제7호·제8호, 제2급제4호 및 제4급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 √ 두 발의 발가락의 상실 또는 기능장애로서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제5급제6호 및 제7급제1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 √ 두 눈의 눈꺼풀의 상실 또는 운동기능장애로서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제9급제4호, 제11급제2호 및 제11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 √ 두 귀의 귓바퀴의 상실장애로서 장애등급 기준에 따른 제11급제6호, 제12급제5호 및 제13급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예외(3) : 하나의 장애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하나의 장애가 장애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애 중 둘 이상의 장애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애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2호) .

예외(4) :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관계에 있는 경우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애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제3호) .

장애등급 기준의 준용

장애등급 기준의 준용

장애등급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등급 기준 중 그 장애와 비슷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으로 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

4.4. 간병급여

4.4.1. 간병급여

간병급여의 의의

간병급여의 의의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1항) .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

간병급여의 대상 및 지급기준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별표 7) .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구분	지급 대상
상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애등급 제1급 (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간병급여의 청구

간병급여의 청구

간병급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간병급여청구서 및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30조제1항,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

1.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2.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 (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3.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4.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

간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

간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간병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간병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간병급여의 지급

간병급여의 지급

간병급여는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간병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간병급여의 지급 기한 및 지급기준 금액

간병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구 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전문간병인	53,060원	35,370원
가족·그 밖의 간병인	46,250원	30,830원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간병급여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미지급 간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간병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간병급여는 미지급 간병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간병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5. 유족급여·장례비

5.1. 유족급여

5.1.2. 유족보상연금

유족급여의 개념 및 지급방법

유족급여의 개념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

유족급여의 지급방법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구분	유족급여 지급방법	내용
1	유족보상연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함)에게 지급
2	반액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3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4	유족보상일시금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

유족보상연금의 개념

“유족보상연금”이란?

“유족보상연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고 함)에게 지급되는 연금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5. 위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의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위의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3항).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 서식).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하며,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청구에 관한 대표자 선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중 1명을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유족보상연금의 청구와 수령에 관한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그 선임된 대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또는 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유족보상연금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유족보상연금액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기본금액: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하, “급여기초연액”이라 함)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 ~ 20%)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간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유족보상연금은 그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2항).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시기

유족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유족보상연금의 조정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유족보상연금의 금액을 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행방불명으로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가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신청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유족보상연금액의 조정 신청을 하려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 서식).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유족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전단).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행방불명된 종전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유족급여표에 따른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후단).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신청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를 신청하려면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 서식).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정지 해제신청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해제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 서식).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유족보상연금의 이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 .

사망한 경우

재혼한 때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가 25세가 된 때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 자녀 또는 손자·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유족보상연금의 이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2항) .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 서식) .

부당이득의 징수

부당이득의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유족보상연금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않고 부당하게 유족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2호).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5.1.3.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의 의의

유족보상일시금의 의의

“유족보상일시금”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함)가 없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사유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하되, 동일 순위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전단).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형제자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후단).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4항).

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

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 서식).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

유족보상일시금액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기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 및 지급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 서식).

※ 위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제출한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의 유족급여청구서에 미지급보험급여에 대한 청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2항).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은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부당이득의 징수

부당이득의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유족일시금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5.1.4. 유족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의 의의

유족특별급여의 의의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본문).

유족특별급여의 청구

유족특별급여의 청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 서식).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및 제79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금액

유족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를 뺀 후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별표 10 및 별표 11).

위의 취업가능개월수는 사망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전단 및 제74조제2항).

※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후단 및 제74조제2항).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효과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효과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유족특별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및 제79조제2항).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5.2. 장례비

5.2.1. 장례비

장례비의 의의

장례비의 의의

“장례비”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장례비 청구

장례비 청구

장례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 서식).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내고 장례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례비청구서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후단).

장례비 지급

유족이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낸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 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단서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2항·제3항).

장례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장례비가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에 따른 장례비 최고금액인 19,279,760원을 초과하거나 장례비 최저금액인 13,943,000원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2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장례비의 사전지급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위 최저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를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의2).

장례비를 사전지급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사전지급한 장례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4항).

공과금의 면제

장례비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5.3.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5.3.1.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근로자의 사망 추정 사유

근로자의 사망 추정 사유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사망 추정 방법

실종근로자의 사망 추정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실종기간 중 사망하였으나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근로자의 사망 추정일

위의 사망 추정 사유로 생사가 밝혀지지 않았던 사람이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사망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근로자실종·사망확인 신고

근로자실종·사망확인 신고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위의 사망 추정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사망이 확인된 때(실종기간 중 사망하여 사고 발생한 날 또는 행방불명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실종 또는 사망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4항).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실종·사망확인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실종·사망확인서에 근로자의 실종이나 사망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 서식).

사망 추정되는 근로자의 유족 등의 유족급여와 장례비 청구

유족급여의 청구

근로자의 사망 추정으로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급여청구서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감정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합니다.

장례비 청구

근로자의 사망 추정으로 장례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내고 장례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후단).

근로자 생존확인 신고 및 보험급여 환수

근로자 생존확인 신고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 유족급여, 장례비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은 사람과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생존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

생존확인 시 보험급여 환수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에 유족급여, 장례비를 받은 사람에게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험급여반환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3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보험급여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7항).

6.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6.2. 직업재활급여

6.2.1.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직업재활급여의 개념 및 종류

직업재활급여의 개념

“직업재활급여”란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애급여자(이하 “장애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애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①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과 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지원 대상자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지원 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함)은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2.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것

※ 취업의 범위

위 2.의 취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1.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동안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나.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취업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 다만,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한 사람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위의 1. 가, 나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 또는 시간 동안 취업한 경우 등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위의 2.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비용 지급

직업훈련기관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이하 “직업훈련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하게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비용의 청구

직업훈련비용을 받으려는 직업훈련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월 1회 단위로 서면 또는 토털서비스, HRD-Net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제4항,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직업훈련비용 청구서(「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직업훈련생의 출석률, 훈련시간 및 훈련실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만, 출결확인 카드로 출결관리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직업훈련비용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비용 지급

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직업훈련기관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2항 본문).

다만, 직업훈련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2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을 받은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지원을 받은 경우

훈련대상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가 직업훈련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은 경우

직업훈련비용의 지급 범위 등

1인당 직업훈련비용 지원한도 금액의 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및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제1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 : 정부지원승인 훈련비

위 이외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훈련 : 6,000,000원

직업훈련비용의 범위 및 직업훈련비용의 세부기준은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수당 지급

직업훈련수당의 청구 등

직업훈련수당의 청구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수당을 받으려면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훈련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월 단위로 직업훈련수당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4항 본문,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28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직업훈련수당의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직업훈련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을 수료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4항 단서).

직업훈련수당의 소멸시효

직업훈련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직업훈련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직업훈련수당은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에서 훈련대상자의 출석률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

60조제1항) .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훈련기간의 일수에 대해 지급

1. 1일 4시간 이상일 것
2. 1주 동안 20시간 이상이면서 4일 이상일 것
3.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일 것

해당 훈련직종 또는 훈련과정의 직업훈련기간 또는 시간이 위의 1., 2., 3.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급

√ 4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에 대해 직업훈련수당 지급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의 직업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수당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훈련직종 또는 훈련 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은 총시간을 8로 나누어 나온 값을 직업훈련을 받은 일수로 보고 그 일수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전단) .

※ 이 경우 8로 나누어 남은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1일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60조제2항 후단) .

특정일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은 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을 받은 시간 전부에 대해 1일분의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 .

직업훈련수당의 지급

직업훈련수당 지급 기한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수당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2조제1항) .

직업훈련수당 지급액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본문) .

※ 다만,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단서) .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사람이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2항) .

수급권의 보호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88조제2항) .

직업훈련수당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6.2.2.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지원금의 수급자격자

직장복귀지원금의 수급자격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장해등급 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해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본문).

※ 다만, 장해급여자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까지의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단서).

직장적응훈련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해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였을 것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제외함)

재활운동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하였을 것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장해급여자가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위의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할 때, 장해급여자 중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요양종결일을 적용하고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청구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청구 시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이하 “직장복귀지원금등”이라 함)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직장복귀지원금: 장해급여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날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청구

직장복귀지원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3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23호서식).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복귀지원금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34조제1항 후단).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직장복귀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직장복귀지원금은 다음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2항 및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제2조).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월 800,000원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월 600,000원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월 450,000원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다음의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3항 및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제3조).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월 450,000원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월 150,000원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

「고용보험법」 제23조·제27조·제32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직장복귀지원금만을 지급하지 않음)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직장복귀 지원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1항) .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2항) .

직업능력 평가 등의 조치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3항).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일정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4항).

6.3. 그 밖의 재할지원

6.3.1. 맞춤형통합서비스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사회복귀 지원"이란

"사회복귀 지원"이란 산재근로자가 빠르고 건강하게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치료 초기부터 ① 사회복귀 지원 상담, ② 신체기능 회복 지원, ③ 일상복귀 지원, ④ 직업복귀 지원을 통합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2조제2호).

사회복귀 지원 상담

사회복귀 지원 상담

"사회복귀 지원 상담"이란 치료 초기부터 사회복귀 할 때까지 다양한 욕구 파악 및 사회복귀 지원의 제공을 위한 상담을 말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2조제3호).

상담 대상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 지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귀 지원 상담이 어렵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사업주, 주치의사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4조제1항).

상담 내용 및 상담 방법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회복귀 지원 상담을 위해 치료기간 및 이용 시기를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귀 지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5조).

1. 요양급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치료와 생계보호 등 보험급여에 대한 절차 안내 및 다양한 욕구파악을 위한 재해상담
2. 요양급여가 승인된 경우에는 신체기능 회복 지원, 일상복귀 지원, 직업복귀 지원의 제공을 위한 지원상담
3. 요양급여 신청 후 그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거나, 위 2.의 상담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고충사항 의견취취 등을 통한 신뢰 형성을 위하여 소속기관 재할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실시하는 감성터치상담

상담 방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

소속기관장은 대면, 유선, 전자적 방법으로 사회복귀 지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6조제1항).

신체기능 회복 지원

신체기능 회복 지원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치료기간 동안 보험급여의 지급 및 상병상태에 적합한 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2조제4호).

치료의 제공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치료기간 동안 보험급여의 지급 및 상병상태에 적합한 치료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7조제1항 전단).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체계적인 신체기능 회복 중심의 전문재활치료 제공을 위해 특별진찰을 의뢰하거나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7조제3항).

일상복귀 지원 등

일상복귀 지원

“일상복귀 지원”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검사, 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취미활동반, 멘토링프로그램을 말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2조제5호).

심리검사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치료 초기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장이 정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심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소속기관장은 위 심리검사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자원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검사 결과를 고용·산재보험토달서비스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심리상담

소속기관장은 심리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1조).

집단프로그램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동료 산재근로자와의 집단적 활동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2조).

가족프로그램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가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통해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3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취미활동반

소속기관장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치료 중인 산재근로자의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취미활동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4조).

멘토링프로그램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에게 멘토의 위기극복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5조).

직업복귀 지원 등

직업복귀 지원

“직업복귀 지원”이란 재해발생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2조제6호).

원직장 복귀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사업주에게 직장복귀계획서 제출 안내 및 치료기간 중 직업능력 평가를 위한 특별진찰을 의뢰할 수 있으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안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7조제1항·제2항).

취업지원

소속기관장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 취업지원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 할 수 있으며,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제2항).

6.3.2. 창업 지원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장애를 입은 산재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자립기반 구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38조).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로서 훈련직종 또는 취득자격종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원하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1항 본문).

※ 점포운영자가 사망,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양가족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점포운영자의 부양가족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1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에 따라 정해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1997. 3. 1 이후 근로복지공단 재활훈련원 훈련과정을 100분의 80이상 이수한 자를 포함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2008. 7. 1. 이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자격기본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증은 제외함)을 취득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았거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되어 같은 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수급한 후 요양종결한 사람

※ 진폐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사람은 훈련 직종 또는 취득자격증이나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이 아니라도 본인이 원하는 업종을 창업지원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1항 단서).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 있는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사실이 정관이나 규약 등으로 확인 가능하며, 창업점포지원 신청 당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근로자의 30% 이상이 산재장해인인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준비 중인 법인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 제외

위의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2항).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일 현재 요양 중이거나 자영업 운영(배우자 포함) 또는 직업생활을 하는 사람(다만,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3조제2항·제3항에 따라 점포이전을 원하는 점포운영자가 점포를 확보하는 기간은 예외로 함)

근로복지공단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생업·영업자금 대부(융자), 자영업 점포지원 또는 영업소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

주점업, 성인오락실 등 성인전용의 유흥 및 사치 향락성 업종에 속하거나 사채, 도박장 등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의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다만, 영주권을 취득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창업지원 대상으로 함)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산재근로자 창업지원결정자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지원결정자가 채권보전 여부 조회의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5개월에 한해 연장가능 함) 이내에 채권보전이 가능한 점포를 확보하지 못해 지원결정이 2회 이상 취소된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대해 납부할 금액이 있는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개월 미만의 훈련과정(다만, 총 훈련시간이 5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제외함) 및 운전면허 과정을 수료한 자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1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하는 직업훈련사업에 따라 정해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1997. 3. 1 이후 근로복지공단 재활훈련원 훈련과정을 100분의 80이상 이수한 자를 포함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2008. 7. 1. 이후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및 기금이 지원되는 창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내용 및 금액 등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내용 및 금액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내의 임대점포(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소유하는 점포는 제외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2조제1항 본문).

다만, 월세가 포함된 점포를 지원하려면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월세금이 월 250만원 이내이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2조제1항 단서).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기간

점포지원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여 최장 6년 이내로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3조제1항).

이율 및 이자납부

점포운영자는 해당 점포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연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4조제1항).

산재근로자 창업지원결정자 선정 및 창업컨설팅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신청

임대점포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산재근로자 창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7조제1항,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사업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7조제2항).

업종

사업(예정)장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사업 (예정) 장소의 전세금 또는 월세금

운영자금, 권리금, 그 밖의 임차보증금 이외의 예상 필요자금 및 그 조달 방법

투자전략 및 구체적인 사업운영 계획

사업 시작 (예정) 일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결정자 선정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결정자는 아래에 따른 창업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창업적정여부평가의견서”에서 ‘보통’ 이상인 자중에서 지원결정자로 선정됩니다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본문).

다만, “창업적정여부평가의견서”에서 ‘미흡’ 이하인 사람은 창업지원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별표 4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단서).

산재장해등급이 높은 자. 이 경우 산재장해등급이 같은 때에는 요양종결일이 최근인 사람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창업컨설팅

근로복지공단은 창업·경영컨설팅 전문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결정자자로 선정된 자에게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컨설팅을 제공하되 인근 다른 소속기관에서 협약을 체결한 위탁기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51조제1항).

※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3.3. 의료재활 지원 (후유증상관리)

관리 증상 및 관리기간

관리 증상 및 관리기간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 및 별표 1).

1. 눈의 장애에 따른 예방관리
2. 귀의 장애에 따른 예방관리
3. 코의 장애에 따른 예방관리
4. 입의 장애에 따른 예방관리
5. 두부, 안면부, 경부 흉터장애에 따른 예방관리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애에 따른 예방관리
7. 흉복부장기 장애에 따른 예방관리
8. 척추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애에 따른 예방관리

찾기 쉬운 생활법령

9. 팔(손가락), 다리(발가락)의 장애에 따른 예방관리

10. 무장해지에 따른 예방관리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단위기간은 증상에 따라 1년, 2년 또는 3년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되거나 1회에 한하여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

※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 및 단위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 대상자 결정

대상자 결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함)은 장애급여의 지급을 결정하는 때 또는 무장해지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에 해당되는 상병의 치유를 결정할 때에 위의 관리 증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5조제1항).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산재근로자가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진료 및 약제 지급

의료기관의 확인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가 해당 증상별 관리내용으로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

약제의 처방 및 지급

소속기관장은 지정 의료기관이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처방전을 발행할 때에는 개인질환에 대한 약제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약제의 처방전을 구분하여 발행하게 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

소속기관장은 예방관리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의사의 처방전이 발행된 때에는 약국에서 약제 등을 받게 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예방관리 대상자는 약국에 처방전 또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결정통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12조제2항 후단).

※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3.4. 사회생활 지원

산재근로자 일상복귀 지원

산재근로자 일상복귀 지원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신체적·심리적·직업적 능력을 회복시켜 원활한 일상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심리검사, 심리상담, 집단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취미활동반, 멘토링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92조, 「[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조 및 제2조).

심리검사

심리검사 지원

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치료 초기의 심리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장이 정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심리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사회복귀 지원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심리상담

심리상담 지원

공단은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5조제1항).

공단은 소속기관장이 지정한 심리상담 담당자가 실시하는 기초심리상담과 심리학회 또는 상담학회 등의 기관으로부터 심리상담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 실시하는 집중심리상담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5조제2항).

심리상담 검사 및 대상

심리상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려면 다음의 심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6조제1항).

다차원심리검사(Ⅰ형)

그 밖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심리검사 도구

다차원심리검사(Ⅰ형) 결과가 임상척도 총점 또는 임상척도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7조제1항 본문).

아래의 경우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차원심리검사(Ⅰ형)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7조제1항 단서).

산재근로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7조제3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따른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에 따른 간병급여 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 자녀

희망찾기프로그램

희망찾기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스트레스와 불안 해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조속한 사회 및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료 산재근로자와의 집단적 활동을 통한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20조).

대상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에 대해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서적 지지를 위하여 가족 및 간병인을 참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21조제1항).

산재근로자가 동일한 위탁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희망찾기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참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단, 신청 이후 불참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21조제2항).

희망찾기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일상복귀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21조제3항).

※ 희망찾기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자기관리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직업적응능력의 향상을 통해 조속한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동료 산재근로자와의 집단적 활동을 통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44조).

대상자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업무상 재해로 통원요양 중인 사람으로 요양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은 사회적응프로그램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45조제1항).

산재근로자가 동일한 위탁운영기관이 실시하는 동일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중복하여 참가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단, 신청 이후 불참하는 경우는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45조제2항).

사회적응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일상복귀지원 프로그램 신청서(「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별지 제2호)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45조제3항 및 제21조제3항).

재활스포츠 지원

재활스포츠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다친 신체 부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신체 능력 회복을 통해 조속히 사회 및 직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활스포츠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58조제1항).

대상자

재해일부터 요양승인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통원요양 중인 사람에게 재활스포츠를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59조제1항 본문).

다만, 요양승인가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재활스포츠지원 신청일 현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59조제1항 단서).

재활스포츠 지원횟수

재활스포츠는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한 번만 지원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60조).

재활스포츠 지원종목

재활스포츠 지원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61조).

1. 일반재활스포츠: 수영, 헬스,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요가, 필라테스, 댄스스포츠(생활발레, 라인댄스, 줌바댄스),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스크린골프·야구, 실내양궁
2. 특수재활스포츠: 수중재활, 척추재활, 재활운동
3. 위 1.에 따른 스포츠 종목을 포함한 패키지프로그램
4.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스포츠 종목

재활스포츠 지원 신청

재활스포츠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재활스포츠지원신청서(「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별지 제44호)를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63조제1항).

※ 재활스포츠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활 의욕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82조).

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은 취미활동반 개설·운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중 재료비, 강사료, 다과비, 그 밖의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91조제1항).

※ 취미활동반 운영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게 멘토의 위기극복 경험을 전수·공유함으로써 산재근로자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활의욕을 고취하며 이를 통해 산재근로자가 조속히 사회 및 직업에 복귀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96조).

대상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멘토링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99조제1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의 장해예상군

「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의 일반서비스대상자 중 일상복귀 지원이 필요한 사람

「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의 잡코디네이터나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또는 주치의가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멘토링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멘토링프로그램 지원횟수

멘토링프로그램은 동일한 사유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총 6회 이내로 지원됩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100조제1항).

※ 멘토링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화합프로그램

가족화합프로그램

공단은 산재근로자가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 심리적·육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속히 사회 및 직업에 복귀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112조제1항).

대상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중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일상복귀지원규정」 제112조제2항).

※ 가족화합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3.5. 생활지원

산재근로자 생활지원

산재근로자 생활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라 함) 그리고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사업(이하 “학자금 융자사업”이라 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조 및 제2조).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생활안정자금”이란?

“생활안정자금”이란 산재근로자 및 그 유족의 의료, 혼례, 장례, 주택이전, 차량구입, 취업안정 및 자녀양육 등에 긴급히 소요되는 비용을 융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조제6호).

찾기 쉬운 생활법령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으로 하며, 월평균소득 산정항목 및 확인방법은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별표 1에 따릅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4조제1항).

1. 유족급여 수급권자
2.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3.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결정받은 사람
4. 용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₂) 질병판정자
5. 용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중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등급을 제1급부터 제3급까지 결정 받은 사람으로 노동능력이 100% 상실된 산재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대상자 사이의 순위는 적힌 순서에 따름)도 융자대상으로 인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4조제2항).

용자의 종류 및 용자 한도액

생활안정자금의 용자의 종류 및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5조).

1. 의료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 그 직계가족의 치료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2. 혼례비: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3. 장례비: 산재근로자의 배우자,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른 장례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4. 차량구입비: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순위자가 생계를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1,500만원 한도)
5. 주택이전비: 산재근로자 본인, 유족급여 수급권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중 1순위자가 주택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1,500만원 한도)
6. 취업안정자금: 장애판정자가 직업에 복귀하여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 그 취업유지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
7. 자녀양육비: 13세 미만의 산재근로자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1,000만원 한도내에서 자녀 1명당 5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율은 연리 1.25%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한 용자사업 대출금리의 평균치에 $\pm 1.0\%$ 범위를 벗어나는 등 융자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생활안정자금 융자이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1항 단서).

생활안정자금의 용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2항).

용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상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6조제3항).

1.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찾기 쉬운 생활법령

2.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3. 3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생활안정자금 용자신청 및 용자예정자 선정

생활안정자금 용자신청

생활안정자금을 용자받으려는 사람은 용자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기한 안에 생활안정자금 용자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7조 및 별지 제6호서식).

1. 의료비: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2. 혼례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3.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4.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또는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 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5.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6.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7. 자녀양육비: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근로자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사람은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7조의2)

생활안정자금 용자예정자 선정 및 통지

소속기관장은 생활안정자금 용자재원을 고려하여 용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용자예정자를 적절히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용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별표 2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18조제1항 및 별표 2).

1. 제1순위: 생활수준(재산세 납부금액)이 낮은 사람
2. 제2순위: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
3. 제3순위: 재해정도(사망, 장애등급)가 높은 사람
4. 제4순위: 용자결정금액이 적은 사람

※ 생활안정자금 용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 용자사업

학자금 용자대상

학자금 용자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입학 예정자 또는 재학 중인 자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2조).

1.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2.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그 배우자 및 자녀
3.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되는 사람, 그 배우자 및 자녀
4.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로서 5년 이상 장기 요양자중인 이산화탄소(CS₂) 질병판정자 본인, 그 배우자 및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자녀

학자금 용자한도

학자금 용자한도는 1인 용자횟수 한도와 세대 당 용자액 한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3조).

1. 1인 용자횟수 한도는 신청자가 재학 중인 대학의 정규 수업연한에 2를 곱한 횟수로 함
2. 세대 당 용자액 한도는 2,000만원으로 함

학자금 용자기간

학자금 용자기간은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4조).

1. 상환기간은 4년 이내로 함
2. 거치기간은 학자금 용자예정자별로 학자금 용자일로부터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정규 수업 연한 중 잔존기간과 유예기간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군복무기간은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음
3. 거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용보증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 11호서식)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자금 용자이율

학자금 용자이율은 거치기간에는 연리 1%, 상환기간에는 연리 2%로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5조 본문).

※ 다만, 금리의 변동 등으로 학자금 용자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5조 단서).

학자금 용자신청 및 용자예정자 선정

학자금 용자신청

학자금을 용자받으려는 사람은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용자신청서를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6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7조).

1. 「근로자신용보증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신용보증지원이 되지 않는 사람
 2. 해당 학기의 학자금에 대한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 ※ 다만, 학자금의 일부만을 장학금으로 받은 사람은 그 차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중퇴·휴학·무기정학·제적 등으로 학업중지 중인 사람
 4. 다른 법에 따라 해당 학기의 학자금 납부를 위해 정부보증 대학학자금 용자를 받은 사람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학자금 용자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경우

학자금 용자예정자 선정

소속기관장은 대학학자금 용자재원을 고려하여 학자금 용자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학자금 용자예정자를

찾기쉬운 생활법령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용자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별표 3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28조제1항 및 별표 3).

1. 제1순위: 생활수준(재산세 납부금액)이 낮은 사람
2. 제2순위: 재해정도(사망, 장애등급)가 높은 사람
3. 제3순위: 용자결정금액이 적은 사람

학자금 수령

학자금 용자예정자는 용자예정자 결정확인서(별지 제14호서식)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자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수령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 제30조).

7.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7.1.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7.1.1.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의 신설 이유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되어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①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또한 ②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를 제정하였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20. 일부개정, 2010.11.21. 시행) 제정이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1까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반 규정에 따릅니다.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절차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절차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의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 ② 근로복지공단의 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진폐진단 의뢰 → ③ 건강진단기관의 진폐진단 실시 → ④ 건강진단기관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진폐진단 결과 통보 → ⑤ 진폐심사위원회의 진폐진단 결과 심사 → ⑥ 근로복지공단의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결정의 순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청구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 청구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2

호서식) .

√ 사업주가 증명하는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사업의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사업주의 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서류 (최초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

√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이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 심장질환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 (뇌심혈관계질환),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환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 (근골격계질환)를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제3호의3서식)

진폐보상연금 청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4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및 진폐보상연금 재청구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람이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2항 본문) .

다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진폐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2항 단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 (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 (공기가슴증)
6. 폐기종 (폐공기증)
7. 폐성심
8. 원발성 (原發性) 폐암 [진폐증 병형 (病型)이 제1형 이상인 사람만 해당]
9. 비정형 (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그 밖의 보험급여 청구

간병급여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간병급여를 청구하려면 간병급여청구서에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0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진폐유족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장례비

장례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례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내고 장례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례비청구서에 장례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후단).

진폐판정 및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진폐판정

근로자가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1항).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은 건강진단기관은 진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2항 및 제1항).

※ 진폐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에 대해서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4호).

※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요양급여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진폐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9제1항).

※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는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는 외에는 일반 산업재해에 의한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 요양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요양급여 - 요양급여 개관 - 요양급여 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진폐보상연금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1항·제2항).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 (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1항·제2항).

※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진폐유족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폐에 대한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에 대한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에 대한 특례는 없습니다.

따라서, 진폐에 대한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는 진폐가 아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지급 방법에 따라 지급됩니다.

※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장해급여·간병급여 - 간병급여 - 간병급여>](#), [<유족급여·장례비 - 장례비 -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1.2. 진폐 판정

진폐진단 의뢰

진폐진단 의뢰

근로자가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건강진단기관에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청구 또는 진폐보상연금 청구를 받으면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람에게 진단일자, 건강진단기관 등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진폐진단 실시

진폐진단 실시

건강진단기관이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다음의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흉부 방사선 직접 촬영

찾기 쉬운 생활법령

폐기능검사, 폐결핵검사, 폐결핵 외의 합병증에 관한 검사 및 그 밖에 진폐관리구분판정을 위해 필요한
검사항목

건강진단기관은 위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정확히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진폐에 대한 진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 및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

진폐진단 수당

진폐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1일당 50,000원을 진폐진단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5항 본문 및 「[진단수당](#)」 참조) .

※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폐진단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5항 단서) .

진폐진단 결과 제출

진폐진단 결과 제출

건강진단기관은 진폐진단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진단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

진폐건강진단 소견서

흉부 방사선영상 및 심폐기능검사 결과지

그 밖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판정에 필요한 것으로 요구한 자료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진폐 소견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기·임시 및 이직자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의 소견이 있어서 건강진단기관이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고 진폐진단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제3항) .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진폐심사위원회는 진폐진단 결과에 대해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1조의7제1항) .

진폐판정

진폐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진단 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함)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1조의8제1항 전단) .

진폐판정 기준

진폐병형의 판정기준과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91조의8제1항 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및 별표 11의2).

진폐병형의 판정기준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합니다.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릅니다.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큰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병형의 판정 기준>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조금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1/2	
제2형	2/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2	
	2/3	
제3형	3/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3	
	3/+	
제4형	A	큰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B	
	C	

심폐기능 정도의 판정기준

고도 장애(F3)

√ 폐기능검사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중등도 장애(F2)

√ 폐기능검사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경도 장애(F1)

√ 폐기능검사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경미한 장애(F1/2)

√ 폐기능검사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지급 결정

보험급여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2항).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및 별표 11의2).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가슴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공기가슴증, 폐기종(폐공기증, 심폐기능이 경도 장애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 √ 진폐로 인해 고도의 심폐기능장애(F3)로 확인된 경우
- √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큰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위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 √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만 해당함)

진폐장해 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제1항 및 별표 11의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제3항).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

시행령」 제83조의2제2항 및 별표 11의3) .

<심폐기능정도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B 또는 C에 해당하는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이거나 제4형이면서 A에 해당하는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2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7.1.3.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근로복지공단은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애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 .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는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가 남은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4호) .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실시 횟수 및 시기 등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실시 횟수 및 시기 등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실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의 재판정은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한번 실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절차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4항 및 별지 제14호서식)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찰

근로복지공단이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 대해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재판정 대상자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통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재판정을 통지할 때 진찰을 받을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찰일자, 진찰부위, 진찰목적에 따른 진찰 항목 등을 지정하여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5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2항).

진폐장해등급에 대한 재판정은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결정하며, 재판정 시작일은 진폐보상연금 지급결정일 또는 정밀진단 이후 진폐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5조제5항·제6항).

장해등급 재판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방법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지정된 진찰일까지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찰을 받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및 진찰일 등을 다시 지정하여 진찰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진찰의 촉구를 받은 사람이 진찰을 받지 않으면 진폐장해보상연금 지급이 일시중지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대상자가 재판정 촉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받도록 지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은 날의 전날까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을 일시 중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제120조제1항제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6조제2항).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진폐장해급여의 지급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에 따른 진폐장해급여의 지급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2항).

진폐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진폐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재판정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진폐장해등급 등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진폐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재판정 결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진폐장해등급 등에 해당하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7.1.4. 진폐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함)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1항) .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진폐보상연금 청구

본직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4항 및 별지 제35호서식) .

진폐보상연금 재청구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사람이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2항 본문) .

다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함)으로부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애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진폐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2항 단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폐공기증)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진폐증 병형(病型)이 제1형 이상인 사람만 해당]
9.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진폐보상연금액

진폐보상연금은 다음의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전단) .

진폐장해연금표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및 별표 6) .

< 진폐장해연금표 >

진폐장해등급	진폐장해연금
제1급	132일분
제3급	132일분
제5급	72일분
제7급	72일분
제9급	24일분
제11급	24일분
제13급	24일분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2항 후단).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진폐보상연금 청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의3).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기간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진폐보상연금 청구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의3).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시기

진폐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 소멸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4.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미지급 진폐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진폐보상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않은 진폐보상연금이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은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 위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제출한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의 진폐유족연금청구서에 미지급보험급여에 대한 청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2항).

미지급 장애급여는 미지급 장애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진폐보상연금에 대한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폐장애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장애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1.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사실
2.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3.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진폐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발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1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 의무자가 수급권자의 사망 1개월 이내에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4항).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애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애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진폐보상연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종전의 장해등급과 비교하여 등급의 급수가 다른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연금액이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된 진폐보상연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계속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액 중에서 기초연금액만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폐로 인해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2조제4항].

진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진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해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에 대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그 요양 또는 재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3조].

진폐에 대한 장해특별급여

진폐에 대한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 사이의 장해특별급여에 관한 합의에 따라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7.1.5.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1항).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라 함)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 제91조의4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5. 위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후단, 제91조의4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1. 및 2.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순위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3항, 제91조의4제4항).

진폐유족연금의 청구

진폐유족연금의 청구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진폐유족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1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진폐유족연금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전단).

진폐유족연금은 다음의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유족보상연금액 산식에 따라 산정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후단).

※ 유족보상연금액 산식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기본금액

√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인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진폐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진폐유족연금액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위의 기초연금과 위의 진폐장해연금표에 따라 진폐장해등급별로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기간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시기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진폐보상연금에 대한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및 진폐유족연금의 이전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제91조의4제4항).

사망한 경우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가 25세가 된 때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제4호)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2항 및 제91조의4제4항).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진폐유족연금을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진폐유족연금의 조정

진폐유족연금액의 조정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진폐유족연금의 금액을 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행방불명으로 진폐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가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하여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진폐유족연금액의 조정 신청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진폐유족연금액의 조정 신청을 하려면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진폐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유족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진폐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전단).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행방불명된 종전의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유족급여표에 따른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후단).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신청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면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해제신청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지해제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부당이득 징수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폐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진폐유족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진폐유족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진폐유족연금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2호).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해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함)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해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4조제2항].

진폐에 대한 유족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아래의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유족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를 뺀 후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별표 11).

8.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8.1.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8.1.2. 평균임금의 증감

보험급여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증감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이하 “보험급여”라 함)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

평균임금의 증감

“평균임금의 증감”이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시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

평균임금의 증감 방법

평균임금의 증감 방법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①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②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본문) .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전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내용 중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text{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 \frac{\text{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text{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전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

※ 비교: “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

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조사의 내용 중 전도시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

$$\text{소비자물가변동률} = \frac{\text{평균임금 증감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 보험연도의 7월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까지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의 합계}}{12}$$

※ 비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은 해당 월의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전년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2026년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4항 후단 및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348 (3.48% 상승)

소비자물가변동률: 1.0194 (1.94% 상승)

적용기간: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평균임금의 증감 신청

평균임금의 증감 신청

평균임금의 증감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을 받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1년마다 직권으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처리 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조제1항).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의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의 증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증감신청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조제4항 후단).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관한 특례

평균임금 증감제도에 관한 특례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②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지만, 2013년 이후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부칙 제2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1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2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 64세

2033년 이후: 65세

8.1.3.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

일용근로자의 의의

일용근로자의 의의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이하 같음)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및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일용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제24조제1항제1호 및 「[통상근로계수](#)」).

일당의 확인 방법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관한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련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1. 재해발생 이전 고용보험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 신고에 관한 사항
2. 재해발생 이전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일당에 관한 사항
3. 재해발생 이전 세법에 의거 신고한 근로소득 등에 관한 사항
4. 일용근로자의 직종 관련 자격여부, 실제 지급된 임금대장, 금융기관 계좌 입금 내역 등에 관한 사항
5. 해당 일용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관한 사항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및 임업의 일용근로자 일당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간한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동일직종에 종사하는 노임단가(재해발생일과 가장 가까운 조사 기준) 및 산림청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의 노임단가를 일당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업 및 임업 이외의 일용근로자 일당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 할 수 없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 지역에서 그 사업과 업종·규모가 비슷하고 그 일용근로자와 성별이 같고, 직종·경력·기술·기능이 비슷한 일용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 일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7조제3항).

8.1.4.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병**(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함)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일반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직업병

“직업병”이란 업무상 질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급성으로 발병한 질병은 제외)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진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병

- √ 근골격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나목만 해당)
- √ 호흡기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만 해당)
- √ 신경정신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
- √ 림프조혈기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
- √ 피부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마목, 자목 및 카목만 해당)
- √ 눈 또는 귀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마목부터 차목까지만 해당)
- √ 간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8호)
- √ 감염성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9호)
- √ 직업성 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0호)
- √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1호나목부터 사목까지 및 아목 1)·2)만 해당]
- √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만 해당)

그 밖에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걸렸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후 일정기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걸렸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질병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진폐고시임금](#)」).

진폐의 경우: 1일당 149,055원(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그 밖의 직업병인 경우: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하 “사업체노동력조사”라 함)에 따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에 관한 조사내용 중 해당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을 해당 근로자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 동안 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위의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란 「통계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상의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과 업종 및 규모가 같은 사업 중 그 근로자와 성별 및 직종이 같은 근로자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

√ 위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본문).

※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단서).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산정 방법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산정 방법

진폐 외의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휴업 또는 폐업 전에 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를 포함함)에는 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위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진폐 외의 직업병이 확인된 날까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및 별표 2 제1호).

위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작성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작성된 최초의 1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전분기 말일 이전 1년”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5항).

위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소멸된 날의 전날을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6항).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신청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신청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을 신청하려면 평균임금산정 특례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6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9항 및 별지 제5호서식).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 적용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 방법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적용 방법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②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또는 '근로자 소속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한 후 직업병이 확인된 경우의 평균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금액을 그 수급권자의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8조제8항).

8.1.5.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보상기준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보험급여의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산정 방법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증감에 의한 평균임금,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 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단서).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2026년 기준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당 268,299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2026년 기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당 82,560원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찾기 쉬운 생활법령

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 방법

평균임금 증감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 방법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는 산재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을 증감하는 경우에는 그 산재근로자의 실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증감하고, 그 증감된 평균임금을 산정 당시의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다음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5조) .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받던 산재근로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9.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9.1.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9.1.1. 심사 청구

심사 청구의 당사자

심사 청구인

심사 청구인은 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심사 청구인 또는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피청구인

심사 청구의 피청구인은 해당 심사 청구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심사 청구 제기

심사 청구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함)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1.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
5.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6.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7.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8.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심사 청구 방법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지사”라 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2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 청구서”라 함)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

1.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2. 보험급여 결정 또는 조치 등의 내용(이하 “보험급여 결정 등”이라 함)
3.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4. 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고지의 내용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위의 진료비에 대한 결정 및 약제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함)에는 심사 청구서에 위의 기재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

1.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2.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 위의 각 기재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

심사 청구서에는 심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

심사 청구 기간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

심사 청구에 대한 보정 요구 및 각하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가 심사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본문) .

※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단서) .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심사 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

※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단서)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심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3항) .

찾기 쉬운 생활법령

1. 심사 청구 사건명
2.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 및 집행정지의 내용
3.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4. 집행정지의 이유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심리 기간 및 절차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2. 진폐인 경우
3. 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경우 그 심리 경과에 관해 심리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4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

당사자 및 관계인은 문서로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항).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3.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만 해당)
4. 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5. 주문

찾기 쉬운 생활법령

6. 심사 청구의 취지
7. 이유
8. 결정연월일

심사 결정서 정본 송부 등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면 심사 청구인에게 심사 결정서 정본을 보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하거나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 청구인에게 그 보험급여 결정 등 또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해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4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심판법」과 관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

심사 청구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민법」 제168조와의 관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1항).

9.1.2. 재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의 당사자

재심사 청구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함)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본문).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단서).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재심사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에 따른 유족이, 그 밖의 자이면 상속인 또는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0조).

재심사 청구의 피청구인

재심사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은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입니다(「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재심사 청구의 제기

재심사 청구 방법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지역본부 또는 지사”라 함)를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2항).

재심사 청구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등의 내용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재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진료비에 대한 결정 및 약제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의 경우는 제외)에는 재심사 청구서에 위의 기재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2항).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재해 당시 소속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재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 위의 각 기재 사항 외에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재심사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3항).

재심사 청구서에는 재심사 청구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제96조제4항).

재심사 청구 기간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3항 본문).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3항 단서).

재심사 청구에 대한 보정 요구 및 각하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가 재심사 청구기간을 지나 제기되었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할

찾기 쉬운 생활법령

수 없는 경우 또는 재심사위원회가 정한 보정 기간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및 제113조).

재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본문 및 제113조).

※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재심사위원회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2항 단서 및 제113조).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정지

재심사 청구는 해당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및 제113조).

※ 다만, 재심사위원회는 그 집행으로 발생할 중대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단서 및 제113조).

재심사위원회가 보험급여 결정 등의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재심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제3항 및 제113조).

재심사 청구 사건명

집행정지 대상인 보험급여 결정 등 및 집행정지의 내용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

집행정지의 이유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기간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없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

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하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기일 및 장소를 정해서 심리기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근로복지공단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심리의 공개

재심사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재심사 청구인의 신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심리조서 작성 및 열람

재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심리 경과에 관해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심리조서를 작성해야

찾기 쉬운 생활법령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사건번호 및 사건명

심리일시 및 장소

출석한 위원의 이름

출석한 당사자의 이름

심리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문서로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의 방법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항 및 제113조).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이름)
3.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 및 주소(재심사 청구를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제기하는 경우만 해당함)
4. 재심사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이름 및 주소
5. 주문
6. 재심사 청구의 취지
7. 이유
8. 재결연월일

재결서 정보 송부 등

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면 근로복지공단 및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결서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및 제113조).

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 청구인에게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및 청구기간을 알려줘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4항 및 제113조).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의 효력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제2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행정심판법」과의 관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2항) .

재심사 청구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3항) .

「민법」 제168조와의 관계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해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제1항) .

9.2. 행정소송

9.2.1.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행정-행정소송의 개요](#)) .

취소소송의 의의

취소소송의 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함)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

취소소송의 당사자

원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 .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행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처분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전단).

위의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3호).

따라서 보험급여의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업무를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되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됩니다.

취소소송의 제기

소장의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제9조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법원 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뒤, 그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송달료규칙」 제3항제1항 및 제2항).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제6호, 「법원조직법」 제40조의4 및 「법원조직법」(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제소기간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본문).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본문).

행정소송과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의 관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 하고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및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취소소송에 대한 심리

요건심리

요건심리는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요건심리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으로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본안심리

본안심리는 요건심리의 결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소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또는 기각할 것인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내용이 이유 있는 경우는 인용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기각됩니다.

※ 행정소송에서의 심리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의 <[행정소송 절차 - 행정소송의 심리 - 심리의 진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확정과 효력

판결의 선고

법원은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각하 판결을 하며,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판결,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판결을 합니다.

판결의 확정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498조).

“상소”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해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라고 하고, 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고 합니다.

판결의 확정 효력

형식적 확정력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해 그 당부(當否)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행정-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해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행정-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반복금지효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행정-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재처분 의무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10.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10.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10.1.1.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요양보상은 매월 한번 1회 이상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휴업보상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제1항).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제2항).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9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

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애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다음의 신체장애등급과 재해보상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1항 및 별표).

신체장애등급과 재해보상표

등급	재해보상	등급	재해보상
제1급	1,340일분	제8급	450일분
제2급	1,190일분	제9급	350일분
제3급	1,050일분	제10급	270일분
제4급	920일분	제11급	200일분
제5급	790일분	제12급	140일분
제6급	670일분	제13급	90일분
제7급	560일분	제14급	50일분

이미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같은 부위에 장애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애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애 정도가 더 심해진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2항).

장해보상을 해야 하는 신체장애 등급의 결정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후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0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지급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81조).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제1항).

유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르되, 같은 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

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친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친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2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라 유족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유족보상 순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이나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83조).

일시보상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4조).

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일시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5조).

보상 청구권 보호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86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재해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합니다(「근로기준법」 제87조).

10.2. 민사상 손해배상

10.2.1.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민사소송절차 개관

찾기 쉬운 생활법령

민사소송절차 개관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소장 작성 전 준비서류

소장 작성 전 준비서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2008, 272면).

원고(피해근로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위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피고(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피고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행하는 생명표(기대여명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사고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인의 진술서 등)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 산업재해기록상의 평균임금(상용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함)

√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정년 이후 통계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장 작성 및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은 원고의 주소지, 피고(사업주)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지(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및 제18조)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찾기 쉬운 생활법령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소장 작성 요령

기본형식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사고경위)은 자세히 기재하나, 손해배상의 범위부분(손해액)은 대개의 경우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부청구를 하고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를 확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합니다(『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2008, 273면).

원고

피해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통상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기재된 가족도 함께 기재합니다(위자료 등과 관련).

피고

통상 책임 있는 당사자를 모두 기재합니다(부진정연대채무).

관할법원의 결정

원고(피해근로자)의 주소지, 피고(사용자)의 주소지, 불법행위지(사고발생지) 3곳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선택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손해 삼분설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대해 침해이익의 성격에 따라 현실로 발생한 적극적 손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의 3개의 소송물로 구성된다는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text{적극적 손해} + \text{소극적 손해}) \times (1 \text{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대

개호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일실수입

- √ 치료기간 동안(통상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 √ 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
- √ 치료종결 후부터는 정년까지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 √ 정년 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통상 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중앙회 발행 농협조사월보 등 참조)

일실퇴직금

- √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정신적 손해(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합니다.

과실상계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

손익상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례비 공제

※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의 손해배상 등 계산 프로그램](http://ejpc.scourt.go.kr/)(<http://ejpc.scourt.go.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제기 외의 소장의 송달(送達), 답변서의 제출,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선고, 확정, 소송 종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http://pro-se.scourt.go.kr/)(<http://pro-se.scourt.go.kr/>) 홈페이지 및 이 사이트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2.2. 민사상 손해배상에 다른 보험급여 조정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의 관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과의 관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전단).

※ 따라서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먼저 받고 보험가입자(사업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은 만큼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단).

찾기 쉬운 생활법령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연금제도가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일시불이 원칙이기 때문에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사업주)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합니다.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정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정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하며,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음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단서).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조정방법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받은 금품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의 종류와 법률적 성질이 같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각각 비교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급권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금품의 성질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8조제1항].

위에 따라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받은 금품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조정하는 경우에 받은 금품의 종류와 그에 대응하는 보험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8조제2항).

치료비(향후 치료비를 포함), 의지·보조기대, 이송비 등 요양에 따른 금품: 요양급여(간병료 제외)

요양기간 중의 간병료에 해당하는 금품: 요양급여 중 간병료

치료종결 후의 간병비에 해당하는 금품: 간병급여

장례비용에 해당하는 금품: 장례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에 해당하는 금품: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진폐보상연금, 유족급여, 진폐유족연금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액 산정 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8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그 지급기준일수에서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만큼 뺀 다음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 그 일수에 지급사유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액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 [산재보상일수 — (손해배상액 ÷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액

※ 근로자가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